

2022년 1분기 『머물자리론』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[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]

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『머물자리론(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)』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2. 1. .
부산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- **사 업 명** : 머물자리론(부산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사업)
- **사업대상** :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
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신혼부부 제외) 세대주1)
※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)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.
 (단,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)

- **모집인원** : 200명 (접수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시 모집종료)
- **접수기간** : 2022. 2. 14.(월) 09:00 ~ 3.6.(일) 18:00 (주 단위 접수 · 심사)

회차	접수기간	① 신규계약(잔금)	② 신규계약(대환 등)	③ 갱신계약(대환 등)	선정일 (예정)
		잔금지급일	잔금지급일, 전입일 중 빠른날	계약갱신일	
1회	'22. 2. 14. ~ 2. 20.	'22. 3. 20. ~ 4. 29.	'21. 12. 20. ~ '22. 2. 20.	'21. 12. 20. ~ '22. 2. 20.	3. 2.
2회	'22. 2. 21. ~ 2. 27.	'22. 3. 27. ~ 4. 29.	'21. 12. 27. ~ '22. 2. 27.	'21. 12. 27. ~ '22. 2. 27.	3. 8.
3회	'22. 2. 28. ~ 3. 6.	'22. 4. 6. ~ 4. 29.	'22. 1. 6. ~ '22. 3. 6.	'22. 1. 6. ~ '22. 3. 6.	3. 15.

**"잔금지급일, 전입일, 계약갱신일" 이 위 기간에 속한 회차에 신청
(관련기준은 머물자리론 신청시기(4페이지) 참조)**

1) 세대주 인정 범위(공사규정): ① 등본상 세대주, ② 배우자, ③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 ④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

□ 지원 내용

- 대출취급은행 : 부산은행
- 대출최대한도 : 1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 내)
 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부산은행)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,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.
- 이차보전금리 : 대출금의 연 1.5%(부산시지원 - 본인 부담 이자 없음)
 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.02% 및 대출 심사와 실행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

□ 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

□ 대출기간 : 1년 이상 ~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
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
□ 상환방식 : 만기 일시상환방식

- 단 기한 연장 시 최최대출금 5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(소득요건 제외)

2. 자격요건

- 신청대상자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
 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
 - 신청일 기준 만 19세~34세 무주택(배우자포함) 세대주
 - 본인(부부합산)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
 -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
※ 은행대출실행(대출금 이체일)은 부산시 선정 후, 15일이후부터 4.29.까지 가능
(대출신청 후, 대출심사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.)

□ 대상주택
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
 - 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
-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

<참 조>

□ 전월세 전환율 6.1% 적용예시

○ 전월세 전환율 = 월세 X 12개월 / (2억원 - 월세보증금) X 100

보증금	2억원	1억 5천만원	1억원	5천만원
월세	0	25만원	50만원	75만원

- **선정기준 (모집인원 초과 시) : 대출신청금액(50점) + 부산시거주기간(50점)**
 -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 (신청인 기준)

① 부부 ▶ ② 연장자 ▶ ③ 대출신청금액(↓) ▶ ④ 부산시 거주기간(↑)
 ※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

□ **제외대상자**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), 주택소유자(배우자 포함)
 - ※ 공동명의 = 1주택
- 정부(공사·공단 포함)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배우자 포함)
 - 주택공급 :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드림아파트, 사회주택, LH주택사업,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
- ※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(월세지원 등)과는 중복수혜 불가
- '17 ~ '21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, 종료자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와 임대차계약한 자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**의무사항**

- 거주지(주민등록) 변경 시
(보증목적물 변경 포함)
- 기초생활 수급 시
- 정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및 부산시 주거정책 참여 시
- 주택(배우자 포함) 취득 시
- 임대차계약 종료 시(대출금 상환 등)



지원종료 신고서 제출
 (미제출 시,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)

3. 접수 및 대출 절차

□ 접수절차

① 부산청년정책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 접속



② 머물자리론 신청하기



③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



④ 신청자 정보 입력 (이름, 주소, 연락처, 임차 주택 정보, 이메일 등)



⑤ 구비서류 첨부 제출

※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(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)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

□ 보증방식

○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
※ 보증 신청에 따른 보증료(대출보증금액의 0.02%)는 신청인 부담

□ 머물자리론 신청(부산청년플랫폼) 시기

① 신규임차계약(전세 입주 시,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필요할 경우)

- 회차별 접수기간(마지막 날) 기준,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개월 이후인 경우

※ 신규임대차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전, 전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② 신규임차계약(전세 입주 후, 대환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)

- 회차별 접수기간(마지막 날) 기준,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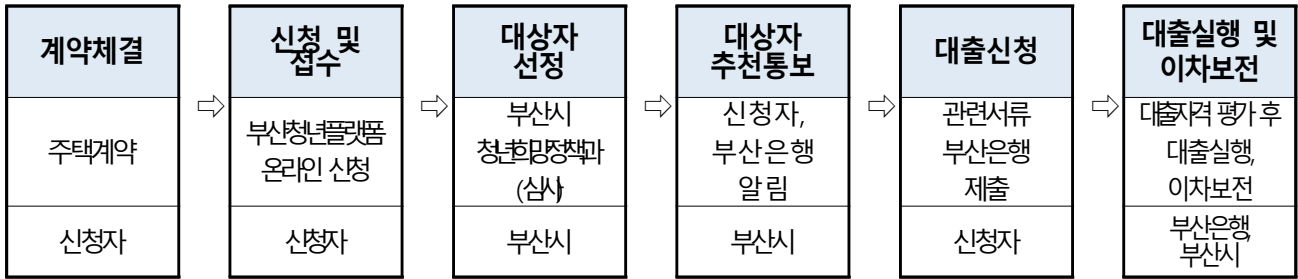
③ 갱신임차계약(전세 입주 후, 대환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)

- 회차별 접수기간(마지막 날) 기준,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

※ 선정 후, 은행 방문 가능 일정과 “필요 서류” 및 상담내용은 개인별 상이하므로 임차 물건지와 가까운 협약은행점으로 문의

□ 대출절차

- 대출신청은 대출실행일(잔금지급일) 최소 15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



- ※ 부산광역시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소득) 심사 및 신용평가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4. 선정 및 발표

□ 선정발표일

- 2022. 3월부터 매주 선정자 공고 예정 (*심사기간 1~2주정도 소요)

□ 확인방법

-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에서 확인 가능

5. 제출서류

□ 공통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분)

- ① 지원신청서(부산청년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, 온라인 작성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온라인 동의)
- ③ 청년정책문자알림 동의서(온라인 동의, 선택사항)
- ④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(온라인 동의)
- ⑤ 주민등록등본(본인의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 - (온라인) "정부24" www.gov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⑥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
 - (온라인) "정부24" www.gov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⑦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 - (온라인)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www.efamily.scourt.go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⑧ 임대차계약서(본인의 주민번호 미포함)
 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제출

□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(기혼자의 경우)

- ①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(배우자 - 서면동의)
- ② 주민등록초본
 - (온라인) "정부24" www.gov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③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 - (온라인)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www.efamily.scourt.go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
6. 기타(유의) 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☎051)120
- “머물자리론”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, 허위·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.
-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는 종료 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. * 생애 1회 참여
-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대출지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부산은행)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,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)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머물자리론 용자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선정 후 유효기간 이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자격제외(지원중단)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음의 ‘사업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’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〈 사업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〉

1.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용자 취급 금융기관(이하 “부산은행”이라 한다.)의 용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부산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3.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용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, 용자대상자 추천 후 유효기간 이내 금융기관 대출 미이행시 향후 용자 추천이 제한됩니다.
4.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부산시 및 부산은행에 제출해야 하며, 부산시 또는 부산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5. 용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또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
- ④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
- 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거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중인 경우
- ⑥ 본인(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
- ⑦ 기초생활수급자, 정부나 지자체의 타 주거 지원정책 참여자,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
- ⑧ 대출(보증)기한 연장 시 만34세를 초과한 경우
- ⑨ 그 외 금융기관 제 규정상 대출·보증제한대상 또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경우

6. 이차보전금 지원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 상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, 채권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.
7.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용자추천을 취소하고 용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① (조건을 위반한 경우)

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자격제외(지원중단)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을 환수금으로 지급합니다.

② (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경우)

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*으로 지급합니다.

* 위약금 = 부산시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+ (이차보전금 × 법정이자 × 지원일수 ÷ 365일)

8. 머물자리론 사업참여자는 향후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(포럼, 토론회, 온라인 설문 조사 등)에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
□ 붙임1 (은행 방문시 구비서류)

-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 - ①-1. 확정일자가 부여된 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” 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
- ②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
- ③ 주민등록등본(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)
 - ③-1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)
- ④ 주민등록초본(혹은 기본증명서)
- ⑤ 재직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
 - ⑤-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
- ⑥ 소득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등)
 - 소득이 없을 경우,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없음, 국세청 발급분) 각 1부
 - ⑥-1. 건강,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,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(요청시)
 -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
 - ⑥-2. 4대보험 가입증명서
 -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
- ⑦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
- ⑧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⑨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
- ⑩ 공사 내규 및 세부 상품별로 정한 기타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※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, 협약은행점으로 문의